식품의약품안전처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청렴韓세상

4·5·6월

식품생활정보
식품공감
2026년 2분기

5월 14일 식품안전의 날






식품안전정보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알아두면 좋은 쏙쏙정보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최근 보도자료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최근 법령 등 제·개정정보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법」/「수입식품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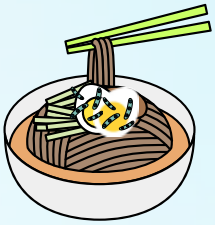
「어린이 식생활법 시행령」

「식품등의 표시기준」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여름철 달걀 조리식품 살모넬라 식중독

최근 냉면 전문점에서 살모넬라 식중독 의심사례가 지속 발생



살모넬라 식중독이란?

- 달걀, 육류, 가금류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세균성 식중독
- 6~72시간(보통 12~36시간) 후 복통, 설사, 발열, 구토 등의 증상
- 여름철에는 특히 온도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

이런 경우 위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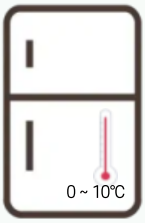
살모넬라 식중독 예방 5대 수칙

1 손 씻기 철저



- 생달걀 만진 후 반드시 비누로 손씻기
- 장갑을 착용하더라도 손을 씻어야 교차오염 예방 가능

2 달걀물 재사용 금지 및 달걀 보관온도 준수



- 달걀물 재사용 금지
- 달걀물 0~10℃ 냉장 보관

3 생달걀과 일반식품 조리공간 분리



- 칼·도마·집게·장갑 등은 용도별로 구분하여 사용

4 육전은 중심부까지 충분히 가열



- 노른자가 완전히 익도록 조리
- 대량 조리 시 속까지 완전 가열

5 작업대·용기·집게 즉시 세척·소독



- 작업대·용기·집게 즉시 세척
- 식품용 기구 소독 철저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다회용 기구·용기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같은 용도에 두 번 이상 계속하여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기구·용기
* 식판 등 식기류, 다회용 컵, 접객업소 배달용기 등

세척·소독 관리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세척제', '헹궁보조제','소독제'를 사용

구분	유형 및 종류	제품 표시 확인
세척제	과일·채소용 세척제, 식품용 기구·용기 세척제	
헹굼 보조제	헹굼보조제	
소독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 제품의 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

소독·건조 조건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또는 열탕, 건열 살균 등의
방법으로 소독하여야함

소독종류	소독방법	비고
소독제 사용	용도에 맞는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를 구입하여 용법, 용량에 맞게 사용	사용직전 조제/농도확인/ 소비기한 확인
열탕	100℃에서 30초 이상	기구·용기를 포개어 소독하는 경우는 끓이는 시간 연장
건열 살균	식품접촉표면의 온도가 71℃ 이상되도록 건열	온도라벨 등을 활용하여 적정성 확인 *살균 적합 확인 온도 : 71℃ 이상

* 다회용 기구·용기의 재질을 고려하여 소독기, 건조기 등 사용 시 변형이 일어나지 않도록 권장 상한온도와 최대 사용시간 설정 필요

세척·소독 적정성 확인

☑ (1회 / 6개월 이상) 살모넬라, 대장균 검사

☑ (1회 / 주 이상) 표면 오염도 측정(ATP 검사)

☑ (1회 / 일 이상) 잔류세제 여부(리트머스 시험지), 살균 적정성 여부(온도라벨) 확인



다회용기 사용이 확대되고, 이를 세척하여 대여하는 서비스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마련

* 자세한 사항은
'식약처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 에서 확인 바랍니다.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최근 보도자료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자가품질검사 시 식품유형별 검사주기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을 4월10일 개정

* 식품(가공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및 용기·포장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주요 내용

● 검사 주기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에서 업종별로 식품유형에 따른 검사주기를 정함
- 식품제조·가공업자는 식품유형에 따라 1~6개월마다 1회 이상 실시
예) 식품유형 과자 : 3개월/1회 빵류 : 2개월/1회 과·채음료 : 2개월/1회(단, 비가열음료는 1개월마다 실시)
-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검사주기를 산정

● 검사 항목 -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고시)에서 정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름

● 검사 면제 - HACCP 적용업소에서 검사대상 식품에 대한 조사평가 결과가 90% 이상인 경우, 다음 연도 1년간 해당 식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면제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식약처는 중국과의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 식품기업의 대중국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5월 28일 중국 칭다오에서 개최된 '제 16차 한·중 식품안전협력위원회'에 참석하고,
같은 날 대한민국 제주에서 '제 17차 한·중 식품기준전문가협의회'를 개최

✓ 중국 수출 식품 생산업체 등록 절차 개선

: 우리나라에 영업 등록한 식품제조업체에 대해 중국 수출 가능업체 명단등록*을 축산물을 제외 한 모든 품목에 대해 요청할 수 있도록 중국 측과 최종 합의
이로인해 **기존 약 3개월 소요**되던 등록 절차가 **약 10일 수준으로 단축**될것으로 기대

* 올해 1월 중국측과의 MOU 체결로, 기존에는 수출희망 업체가 각각 중국측에 등록해야 했던 것을 식약처가 일괄 등록할 수 있도록 협의

: 중국 수출 생산기업 등록규정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
다만, 중국측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는 8월 중에 실제 적용

그 전에라도 중국 수출을 원하는 업체는 종전대로 중국 수입식품 해외생산 기업 등록관리 시스템에서 신청 가능,
도움이 필요한 경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음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지원 신청방법

- 해썹인증원 누리집(https://www.haccp.or.kr/) → 공지사항 → 지원양식 다운로드 및 작성 → 이메일 송부

문의사항 국제사업본부 국제인증팀
이메일 ict@haccp.or.kr 전화 043-928-0162

✓ 고기 성분 함유 라면의 대중국 수출기반 마련 등 수출 현안 해소

: 중국은 가축전염병 우려로 미량이라도 고기성분이 들어간 우리나라 라면 수입을 금지.
이러한 제약때문에 우리 라면의 고기 육수 맛, 진한 맛을 내기 어려웠고 고기맛 향을 내는 식품첨가물로 대신함

: 이번 합의를 통해 중국으로 수입이 허용된 국가의 고기를 사용하였고 적절하게 열처리한 라면스프를 사용한 라면은 수출할 수 있는 길 열림

✓ 국제 규제 동향 공유 등 양국 간 식품안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논의

법령 등 제·개정정보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26. 6. 9.)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조사·평가 「식품위생법」 제48조 (시행일 '29.1.1.)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에 대하여 실시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조사·평가 업무를
1.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조사·평가와 2. 식품위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수시로 실시하는 조사·평가로 구분

개정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안전관리인증적용업소의 공정별·품목별 위해요소의 분석, 기술지원, 인증 및 제48조의3제1항에 따른 **정기조사 등의 업무**를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에 위탁**

특수의료용도식품의 관리체계 구축 (시행일 '27.5.27.)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의료용도식품에 대한 소비자 수요 증가에 따른 관리체계 구축

① 특수의료용도식품이란?	질병, 수술 등 임상적 사유로 특별한 분량의 영양소 섭취가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적합한 영양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가공된 것 등
품목제조신고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가공업자가 특수의료용도식품의 제조·가공 시 사전에 품목 신고를 하도록 하여 식품 기준 및 구격에 대한 관리 강화
위생관리책임자	위생 및 품질관리를 위하여 특수의료용도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자는 일정 자격기준을 갖춘 위생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선임·해임 시 신고
행정제재 등	특수의료용도식품의 품목신고 등과 관련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제재처분, 벌칙 및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26. 4.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자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

✓ 파산선고 등을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12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

예)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영업의 등록 등))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 1항에 따른 영업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기존 5.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경우

변경 5.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법령 등 제·개정정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26. 5. 6.)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 추가

국민의 건강한 식품 선택 환경 조성을 위해 다소비 식품인 치킨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 등 관리가 필요하여,
어린이 기호식품의 범위에 치킨을 추가

추가 [별표 1] 제1호.차. 치킨류(즉석섭취식품, 즉석조리식품, 식육함유가공품, 양념육 및 분쇄가공육제품 중 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

추가 [별표 1] 제2호.라. 치킨(닭을 주원료로 하여 튀기거나 구운 식품)

변경 [별표 1] 제2호.라. ➡ 마.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라면, 떡볶이, 꼬치류, 어묵, 튀김류, 만두류, 핫도그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6. 5. 12)

디카페인 커피 표시기준 개선

지난해 11월 발표한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 중 하나로,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 디카페인 커피의 표시기준을 강화

기존 카페인 함량을 90%이상 제거한 제품은 "탈카페인(디카페인)" 표시

예) 디카페인커피A 90% 제거 → 카페인 함량 기준 100mg→ 10mg남음

디카페인커피B 90% 제거 → 카페인 함량 기준 200mg→ 20mg남음

변경 원료로 사용한 커피원두(고형분 기준)의 잔류 카페인 함량이 0.1% 이하인 경우 (시행일 '28.1.1., 선적용 가능)
"탈카페인(디카페인)" 또는 "탈카페인(디카페인) 원두 사용" 표시

주류 협업제품의 소비자 오인 방지를 위한 표시 강화

최근 주류와 일반식품이 협업하여 일반식품과 유사한 용기·디자인의 주류 협업제품이 출시되면서
소비자가 이를 주류가 아닌 다른 식품으로 오인·혼동할 가능성 발생

신설 주류 협업제품의 주표시면에 '술' 또는 '주류' 문구를 표시*

* 테두리 안에 20포인트 이상의 글씨 크기로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표시



<일반 가공식품 / 주류협업제품 비교 예시>

국민 안심이 기준입니다
YOUR SAFETY IS OUR STANDARD

식품생활정보
식품공감
2026년 2분기

출처 및 참고자료

- 식품안전정보

1. 여름철 식중독 예방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보도참고] 식약처, 여름철 달걀 조리식품 살모넬라 식중독 주의 당부

- 알아두면 좋은 쏙쏙정보

1. 다회용 기구·용기 세척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다회용 기구·용기 세척·대여업체 위생관리 지침

- 최근 보도자료

1.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민원인안내서>알기쉬운 식품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보도참고] '알기 쉬운 식품 등의 자가품질검사 요령' 개정

2. 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한.중 식품안전 협력으로 K-푸드 중국 수출길 넓힌다

- 최근법령 등 제·개정정보

1. 「식품위생법」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식품위생법

2. 「식품위생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개정·공포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식품위생법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3.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고시(안) 입법예고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6-217호)

4. 「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 식품의약품안전처>알림>언론홍보자료>보도자료>디카페인 커피 안심하고 선택하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법령/자료>법령정보>제개정고시등>「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식약처 고시 제2026-37호, 2026.5.12.)

발행처

-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과
- https://www.mfds.go.kr/gwangju/index.do>소통알림>공지사항

청렴韓세상